

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

[illegible]
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고마약류의 발생을 보고합니다.

제출서류

1. 재해로 인한 상실의 경우: 관할 시·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류
2.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: 수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
3. 변질·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: 제출하지 않음

이
의
의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답당자 성명

담당자 전화번호
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작성방법

⑩ 의료용 환제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6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한 의약품 표준코드를 적습니다. 다만, 마약류 원료 등 품목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품목코드를 적습니다.